

2020학년도 2학기

꿈을 발견하고 인성을 키우며 배움을 실천하는
행복한 교육공동체

코로나19 대응을 위한
학생평가 운영기준

2020. 9.



전주덕진중학교
JeonJu Deokjin Middle School

교 육 연 구 부

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2학기 학생평가 운영기준

1. 기본 원칙

-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수행평가, 지필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고, 평가의 객관성·공정성·투명성과 신뢰도 제고
-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
-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하지 못한 과제물 내용은 평가하지 않음
 -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·확인한 경우 학생의 성취도, 태도, 참여도, 수행 역량 등은 평가 가능
- 평가(지필 및 수행평가)의 방법 및 반영비율, 횟수 등은 내신성적 산출 결과의 타당성,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함
 - ※ (과목별 수행평가 반영비율) 20% 이상,
 - ※ (지필평가 1회만 실시할 수 있는 수행평가 반영비율) 40% 이상
- 출결 인정 방법과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함

2. 지필평가

- 학년 단위 혼합 고사장 운영을 지양하고, 기저질환 학생,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의 경우 자기주도학습실 등 유휴 교실 활용
- 지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완화(2학기 유지)

- 지필평가 1회 실시 가능 수행평가 최소 반영비율을 70%에서 40%로 감축
- 고사실 2인 감독 배치가 원칙이지만 1인 감독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1인 감독 배치
- 정답이 없거나 모두 정답인 경우 등 재시험 사안이 발생한 경우 1학기에 한하여 학교에서 재시험 시행 여부를 판단함.

- 지필평가(정기고사) 시행 중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
 - 비상상황 발생 시 시험 중단 후 후속 조치(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)
 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부모님께 연락하여 선별진료소 또는 귀가 조치
- 결시생 성적처리: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

[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]

- (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)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8조(인정점 부여)에 따라 산출
- (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)
 - ① (일부 학생 미응시)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8조(인정점 부여)에 따라 산출
 - ② (학급 단위 미응시) 시험 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, 불가피할 경우 ‘일부 학생 미응시’의 경우를 참고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
 - ③ (학년(교) 단위 미응시) 시험 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, 불가피할 경우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 마련

3. 수행평가

- 수행평가는 일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고 학기 중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교과별로 평가계획 수립
- 학생 간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모둠형 수행평가, 비밀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는 지양하며, 개인별 활동을 중심으로 한 수행평가 실시
- 코로나19로 인한 ‘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’

- 수행평가에 응시한 교과와 영역은 인정
- 수행평가 미응시 교과와 미응시 영역은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7조(수행평가) 14. 에 의거 산출

<예시>

※ 기본점수가 있는 영역의 경우
 점수 = 해당영역 수행평가 기본점수 +
 해당영역 수행평가 배점(기본점수 제외) × $\frac{\text{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}}{\text{지필평가의 배점 총점}}$

※ 기본점수가 없는 영역의 경우
 점수 = 해당영역 수행평가 배점 × $\frac{\text{당해자의 지필평가 득점}}{\text{지필평가의 배점 총점}}$

※ 공정한 수행평가를 적정 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 사전 확보 노력

4.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생평가 방침

- (1·2단계)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산출 가능
- (3단계) 중1·2는 성적을 미산출하는 PASS제 적용 가능, 중3은 평가를 실시하여 성적 산출(훈령 개정 후 별도 안내 시 시행)
- ※ (지필평가) 제한적 등교일을 활용하여 평가 실시, (수행평가) 가급적 원격수업을 활용하되,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제한적 등교일에 평가 가능

【 중학교 1·2학년 PASS제 적용 기준 】

▶ 학생이 진급 기준*을 충족한 경우 이수(P) 처리하고, 형성평가 등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확인하여 맞춤형 피드백 제공 활성화

*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0조: ②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
5. 비상 상황 발생 시 후속 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

[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]

대상	등교중지 기간	출결처리 등	인정점
확진 받은 학생	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
격리 통지 받은 학생	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
가족(동거인)이 격리 통지받은 학생	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
의심증상학생	증상 소멸 시까지 *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	○출석인정결석 ○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,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	기준점수의 100%*

*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,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

[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]

대상	조건	출결처리 등	인정점**
고위험군 학생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	기준점수의 100%
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관심', '주의'	○질병결석 ○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	기준점수의 80%
교외체험 학습* (가정학습)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○출석인정결석	기준점수의 80%

기타결석(감염 우려)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○기타결석 ○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	기준점수의 80%
미인정 결석	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	미인정 결석	최하점의 차하점

※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

6. 원격수업 운영 시 학생평가•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원칙

○ (유형 Ⅰ) 수업 중 관찰·확인 가능형

-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해 직접 관찰·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가능

*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,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,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

- (예시 1) 실시간 쌍방향(화상) 수업 시 실시한 토의·토론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참여도, 논리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- (예시 2) 실시간 쌍방향(화상) 수업 시 실시한 발표 수행평가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발표 참여도, 이해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
○ (유형 Ⅱ) 수업 후 관찰·확인 가능형

- 원격수업 후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통해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학생의 수행 결과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

【 원격수업 기간 중 수행평가, 기록 가능 유형(Ⅱ유형(동영상 제출)) 교과(목) 】

- 국·영·수·사(도덕/역사)·과를 제외한 모든 과목 가능

- (예시 1) 학생이 수행하여 제출한 생활제조 영상을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하여 자세 및 순서 정확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- (예시 2) 학생이 수행하여 제출한 식재료 다듬기 영상을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하여 조리 과정, 완성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
○ (유형 III) 수업 후 관찰·확인 불가형

- 원격수업 시 학생이 제출한 과제*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
 - * 에세이, 독후감, PPT, UCC 등
- 단, 등교수업(또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)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

- (예시 1) 등교수업에서 ‘비평의 기법’에 대해 지도하고, 원격수업 중 작성한 독후감을 수정·작성 및 발표하게 하여 교사가 관찰·확인한 이해도, 태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- (예시 2) 원격수업 중 작성한 실험 계획서를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실험을 실시하고, 실험 중 교사가 관찰·확인한 학생의 이해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
○ (유형 IV) 수업 중 관찰·확인 불가형

- 원격수업 시 학생이 실시간 작성한 자료*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
 - * 실시간 채팅, 문자메시지, 댓글, SNS 메시지 등
- 단, 등교 수업(또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 원격 수업)시 해당 자료 및 교사 피드백과 연계한 수업 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·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

- (예시 1) 원격수업 시 채팅 등으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3:3 토론을 진행하고, 토론 활동에서 관찰한 학생의 논지, 태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- (예시 2) 원격수업 시 댓글을 활용하여 창작한 모둠별 단편극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실시한 모둠별 단편소설 창작 활동에서 교사가 관찰한 창의성, 협동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

7.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생평가·기록 기준

구분		중		자유학기
평가	1·2 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(학기말 성적) 산출 •(지필·수행평가) 선택 가능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(학기 말 성적) 미 산출(P처리) •평가 실시
	3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(학기말 성적) - (1·2학년) 미산출 가능(P처리) - (3학년) 산출 •(지필·수행평가) - (1·2학년) 미실시 가능 - (3학년) 선택 가능 		
교과 세특	1·2·3 단계	기재 대상	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한 범위(특기할 만한 사항)	모든 학생의 모든 과목 ※ 자유학기 활동 포함
		기재 내용	교사가 관찰·평가한 내용 ※ (3단계 시) 교사가 관찰·평가한 내용 + <u>원격 수업 내용(포함 가능)</u>	
창·체	1·2 단계	기재 대상	모든 학생	
		기재 내용	정량자료 및 교사가 관찰·평가한 내용 ※ 관찰 가능 수업 시간 확보	
	3단계	기재 대상	모든 학생	
		기재 내용	자율 활동	
동반 활동			정량기록 + 교사 관찰·평가 내용 + (원격수업 내용) ※ (가능할 경우) 관찰 및 학생 상호평가 내용	
진로 활동	정량기록+원격수업 내용+대면/비대면(유선 포함) 진로상담 결과			
행·특	1·2 단계	기재 대상	모든 학생	
		기재 내용	교사의 관찰·평가 내용, 상담 내용 ※ 실시간 온라인(유선 포함)으로 진행한 진로상담 결과 포함 가능	
	3단계	기재 대상	모든 학생	
		기재 내용	대면·비대면(유선 포함) 관찰·평가 내용 (필요 시 정량기록 포함 가능)	